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6160

발의연월일: 2022. 6. 28.

발 의 자:서삼석·김원이·김진표

위성곤 • 전용기 • 신정훈

김정호 · 안규백 · 오영환

장경태ㆍ허 영ㆍ신현영

윤재갑 · 김승원 · 임종성

유정주 · 강민정 · 윤영덕

황운하 · 김철민 · 소병철

민형배 · 김선교 · 이원택

박 정・임호선・최기상

노웅래 • 백혜런 • 김승남

최인호 · 김영주 · 어기구

이개호 의원(3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,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용수 개발사업, 배수(排水) 개선 등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간척·매립·개간을 통한 농지확대 개발사업 등이 있음.

이 중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은 10년 빈도 가뭄에 농업용수를 공급하

는 데 지장이 없는 수리안전답을 설치하는 사업으로,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미수리안전답은 31만ha에 달하지만 정부는 2030년까지 18%(5만5천ha)만을 수리안전답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가뭄 발생 시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실정임.

또한 상습침수구역 배수 개선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경우 매년 5천억원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 반영은 5편 평균(2017~2021년) 2,920억원에 불과해 사업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습침수구역이 8만 7천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.

이렇듯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한 농어촌 수리시설의 확충·개선이 시급함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의 '기후변화 대응 농업시설 정비 추진 현 황'자료에 따르면 2013~2018년에 적용한 '농업생산기반 정비 중장기 계획'수립 후 아직까지도 이후 적용할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농어 촌용수 개발사업 및 배수 개선 사업 등의 농어촌 물관리 사업을 이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.

이에 수립 주기 부재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계획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,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한 농어촌 물관리가보다 안정적·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1항 중 "정비계획을"을 "정비계획을 5년마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	제7조(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
예정지 조사) ① 농림축산식품	예정지 조사) ①
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	
조사 결과와 제4조에 따른 농	
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기초로	
논농사, 밭농사, 시설농업 등	
지역별・유형별 농업생산기반	<u>정</u>
정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	<u>비계획을 5년마다</u>
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